

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143)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우 미 경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이 개정안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 “교량”을 “다리”로 하고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이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